

October 24, 2018

Legal Update

한국형 규제 샌드박스 3법 (2):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정보통신융합 기술·서비스에 대한 규제 샌드박스 도입 및 신속처리·임시허가 제도개선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정보통신융합법’)이 2018. 10. 16. 공포되어, 3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2019. 1. 17.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는 정부가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신기술·신산업 분야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관계부처 합동으로 2017. 10. 19. 「신산업 분야 네거티브 규제발굴 가이드라인」을 확정·발표한데 따른 후속작업으로 입법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개정 정보통신융합법은 네거티브 규제원칙을 대원칙으로 하여, 기존 법령의 미비나 불합리한 규제를 일시적·제한적 범위에서 면제하여 해당 기술·서비스의 효용성을 실증하는 규제 샌드박스 제도와, 아울러 기존 법령을 정비하는데 소요되는 시간 동안 시장에 기술·서비스를 출시하여 실제 시장에서 기술·서비스 제공을 허용하는 임시허가 제도를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신속처리 및 일괄처리 제도를 통해 법령검토 및 여러 규제기관에 걸친 인허가 사항에 대한 확인 및 신청절차를 손쉽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여 편의를 도모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스타트업을 비롯한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를 이용한 다양한 아이디어들의 사업화가 허용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하에서는 개정 정보통신융합법의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① 네거티브 규제원칙 선언(제3조의2)

정보통신융합법은 정부가 2017. 10. 19. 관계부처 합동으로 확정·발표한 「신산업 분야 네거티브 규제발굴 가이드라인」에 따라, 정보통신융합 기술·서비스를 이용한 사업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저해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허용된다는 네거티브 규제의 원칙을 선언하고(제3조의2 제1항), 나아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서비스 관련 소관 법령 및 제도가 네거티브 규제원칙에 부합하도록 정비하는 노력을 기울일 것을 대원칙으로 규정하였습니다(제3조의2 제2항).

개정 정보통신융합법은 네거티브 규제원칙을 시장에 실제로 적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 규제혁신제도인 ‘규제 샌드박스’와 ‘임시허가 제도’를 마련하였습니다.

②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규제 샌드박스) 도입(제38조의2)

‘규제 샌드박스’(Regulatory Sandbox)란, 일정한 기간 동안 제한된 장소·대상 등을 설정한 후 기존 규제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적용하지 않고 기술·서비스를 실제로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그 기술·서비스의 효용성, 안정성 등을 검증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영국에서 핀테크 산업 육성을 위해 최초 시도하였던 제도로써 어린이들이 자유롭게 노는 모래 놀이터처럼 제한된 환경에서 규제를 풀어 신사업을 테스트하려는 취지입니다. 임시허가 제도는 상용화 단계의 정보통신융합 기술·서비스를 다른 법령상의 규제로 인하여 사업화하지 못하는 경우에 시장출시를 허용하는 제도로써, 신기술·서비스의 효용성, 안정성 등의 실험을 통한 실증자료를 취득하려는 목적을 가진 규제샌드박스(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제도와 그 취지를 달리합니다.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먼저 정보통신이 융합된 기술·서비스를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려는 자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기존 정보통신융합법에서는 신속처리·임시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 자의 범위를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서비스를 개발한 자’로 한정하고 있었으나, 기술·서비스를 스스로 개발한 자가 아니더라도 이를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려는 자라면 누구든지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자의 범위를 확대한 것입니다(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임시허가제도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신청자의 자격을 동일하게 확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신청자가 사업을 영위하려는 정보통신융합 기술·서비스가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등을 신청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따른 기준·규격·요건 등을 적용하는 것이 불명확하거나 불합리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온라인 폐차장 중개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는 해당 서비스의 내용상 폐차장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중개를 하는 것이므로 자동차관리법상 폐차를 알선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사업 자체가 법령에 의해 금지되고, 달리 인허가를 신청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이러한 경우 온라인 폐차장 중개서비스는 정보통신을 융합하여 폐차를 알선하는 서비스에 해당하고, 폐차알선은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금지되므로 법령에 의하여 허가등을 신청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정보통신융합법 제38조의2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므로,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양한 신기술·서비스에 대한 규제 샌드박스 지정 및 임시허가를 전문적으로 심의·의결하기 위해 관계부처 공무원과 해당 기술·서비스에 대한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심의위원회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심의위원회는 규제 샌드박스 또는 임시허가 신청을 받으면 해당 기술·서비스의 분야를 고려하여 관계기관과 관련 전문가가 결정되어 위촉됩니다. 심의위원회는 규제 샌드박스 지정 여부를 심의하는 과정에서, 해당 기술 서비스의 혁신성, 관련 시장 및 이용자 편익에 미치는 영향 및 효과, 국민의 생명·안전의 저해 여부 및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호·처리,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적정성 등을 고려하게 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부터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지정을 받은 사업자는 일정 기간 동안 해당 기술·서비스를 이용한 사업의 영위를 가로막던 규제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적용을 면제받게 됩니다. 규제 샌드박스의 지정을 받은 사업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관계부처의 지속적인 관리·감독을 받게 되며(개정 정보통신융합법 제38조의3), 해당 기술·서비스의 효용성·사업성 등에 대한 실증 결과를 보고하게 됩니다. 만약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지정에 따른 실증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실증이 완료되지 않고, 해당 기술·서비스의 효용성, 안정성 등을 실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업자가 신기술·서비스에 대한 규제특례를 신청하여 관계부처 검토 및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규제특례의 지정기간을 2년 이내의 범위에서 1회 연장받을 수 있으며, 규제 샌드박스 지정에 따른 실증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내려질 경우 실증기간(2년 이내)이 만료되지 않더라도 해당 실증작업이 종료될 수 있습니다.

이로써 사업자는 기술·서비스에 대한 실증을 통해 기술 검증 및 문제점 확인 등 기술·서비스의 완성도를 제고할 수 있고, 정부는 실증 데이터를 기반으로 법·제도 개선을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③ 신속처리 제도 개선(제36조)

임시허가·신속처리 제도는 관련 법령이 없거나 미비한 경우 신기술·서비스의 사업화가 지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2014년 2월부터 도입되었지만, 임시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반드시 신속처리를 거치도록 하여 임시허가의 신청요건을 갖추기가 매우 어렵다는 점과 임시허가의 유효기간이 1년(1회 연장 가능)에 불과하여 관련 법령이 정비되기까지 부족하다는 미비점이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신속처리 제도와 임시허가 제도는 분리되어, 신속처리 제도는 신규 정보통신융합 기술·서비스에 대한 법령의 적용 여부나 허가등의 필요 여부를 확인해주는 서비스로 변경됩니다. 사업자가 신속처리를 신청하면, 과기정통부는 중앙행정기관을 비롯하여 지방자치단체에 해당 신속처리 신청 내역을 통보하고, 과기정통부의 통보를 받은 관계기관은 30일 내에 소관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허가등이 필요한지 여부를 회신하여야 합니다. 이로써 사업자는 자신이 영위하려는 사업에 적용되는 각종 규제 및 필요한 인허가 사항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어, 정보통신융합 기술·서비스를 이용한 사업을 개시하기 전에 법령 검토에 들이던 노력을 크게 경감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④ 일괄처리 제도 신설(제36조의2)

사업자가 신속처리 제도를 통하여 정보통신융합 기술·서비스를 이용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 2개 이상의 부처 허가 등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 해당 부처에 일일이 인허가를 받을 필요 없이 과기정통부에 한번의 신청만으로 여러 부처의 인허가 심사절차를 동시에 개시하는 일괄처리 제도가 신설되었습니다. 사업자가 신속처리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자신의 사업에 필요한 인허가 사항을 알고 있는 경우 신속처리를 거친 경우와 마찬가지로 과기정통부에 일괄처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여러 부처에 걸쳐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자의 편의성이 규제에 인한 불편함이 대폭 해소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⑤ 임시허가 제도 개선(제37조)

임시허가 제도는 신기술·서비스에 대한 근거법령이 없거나 명확하지 않은 경우 신속한 사업화가 가능하도록 임시로 허가하는 제도로서, 이미 상용화를 할 수 있을 정도로 기술·서비스가 완성되었음에도 각종 규제에 인하여 해당 기술·서비스를 이용한 사업의 영위가 어려운 경우에 신기술·서비스를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하되, 임시허가를 받아 사업을 영위하는 동안 관계부처가 법령등을 정비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위하여 임시허가를 할지 여부는 과기정통부가 단독으로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기술·서비스와 관련한 관계기관이 반드시 의견을 개진하도록 되어 있으며(정보통신융합법 제37조 제3항), 관계기관은 임시허가를 부여하는 심의위원회에도 참여하게 되어 있습니다(정보통신융합법 제10조의2 제2항 제2호). 관계기관이 임시허가 과정에서 참여하는 것은 임시허가를 통한 사업 개시 이후 법령 정비를 통한 본허가로의 이행을 예정한 임시허가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에 반드시 필요한 과정으로, 본 개정안으로 임시허가를 통한 정보통신융합 기술·서비스를 이용한 사업의 안정적 운영 기반이 마련된 것으로 평가됩니다.

또한, 기존 정보통신융합법에 따른 임시허가의 유효기간이 1년(1회 연장 가능)으로 법령 정비 등 제도개선에 소요되는 시간에 비하여 매우 짧아, 법령 정비가 완료되지 않았음에도 임시허가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사업을 중단할 수 밖에 없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임시허가의 유효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1회 연장 가능) 확대하였습니다. 아울러 임시허가 유효기간을 연장함으로써 법령 정비가 완료되어 본허가를 받지 않고 임시허가에 안주하는 사업자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임시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이 정비된 경우 지체 없이 그 법령에 따라 허가등을 받을 의무를 부과하였습니다(정보통신융합법 제37조 제7항). 이와 더불어 관계부처가 임시허가 기간 동안 법령을 정비하도록 노력할 의무를 법률에 명시하여 임시허가 이후 안정적 사업 영위에 대한 관계부처의 책무를 강화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세종은 정보통신융합법의 주요 내용 및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서비스를 이용한 사업에 적용되는 규제 전반에 관하여 다양한 측면에서 법률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기 내용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 등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의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 아래 연락처로 연락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한 내용을 상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ontacts



강신욱
파트너변호사

☎ 02-316-4059
✉ sokang@shinkim.com



장준영
파트너변호사

☎ 02-316-4410
✉ jyojang@shinkim.com



박규홍
변호사

☎ 02-316-4290
✉ khpark@shinkim.com

SHIN&KIM | 법무법인 세종

법무법인 세종 뉴스레터의 게재된 내용 및 의견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발행된 것이며, 어떤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적 의견을 드리는 것이 아님을 밝힙니다.

The content and opinions expressed within Shin & Kim's newsletter are provided for general informational purposes only and should not be considered as rendering of legal advice for any specific matter.